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29

발의연월일: 2025. 1. 22.

발 의 자:서일준·최보윤·조경태

김 건 • 이헌승 • 김은혜

서범수 · 윤한홍 · 김위상

정동만 • 이철규 • 윤영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「특허법」상 손해배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.

그런데,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, 실용신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침해소송에서 증거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허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조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의 영업 비밀 등 민감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특허소송의 실효 성있는 증거수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0조·제43조 및 제47 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772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"제128조의2"를 "제128조의2, 제128조의3"으로 한다.

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1.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128조의3제3항에 따른 지 정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- 2.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

제49조의2제1항 중 "사유 없이"를 "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「특허법」 제128조의3제7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는"으로 한다.

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128조

의3제1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 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법인의 경우: 1억원 이하
- 2. 법인의 임원·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: 5천만원 이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0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 실용	제30조(「특허법」의 준용)
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	
「특허법」 제126조, 제128조,	
<u>제128조의2</u> 및 제130조부터 제	제128조의2, 제128조의3
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
제43조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	제43조(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
대한 공무원 의제) (생 략)	대한 공무원 의제) <u>①</u> (현행 제
	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
	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「공
	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
	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
	<u>다.</u>
	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
	「특허법」 제128조의3제3항
	에 따른 지정전문가 중 공무
	원이 아닌 사람
	<u>2.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</u>
	「특허법」 제154조의2에 따
	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
제49조의2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	제49조의2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

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 ① ----- 사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 제52조(과태료) <신 설>

① · ② (생 략)

이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없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특허법」 제224조의3제1항에 <u>「특허법」 제128조의3제7항</u>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또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 이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<u>「특허법」 제128조의3제12항</u> 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 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법인의 경우: 1억원 이하 2. 법인의 임원 · 종업원과 그 밖 의 이해관계인의 경우: 5천만 원 이하

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)